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23
----------	-------

발의연월일 : 2021. 8. 31.

발 의 자 : 조정훈 · 송재호 · 강민정  
박 정 · 송기현 · 박덕흠  
윤영덕 · 강훈식 · 이용선  
한준호 · 임오경 의원  
(11인)

## 제안이유

선거공보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공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후보자가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제출받아 각 세대에 발송하고 있음.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에서 작성되고 있는데, 매 선거마다 많은 양의 선거공보가 제작되고 폐기됨에 따라 자원의 낭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약 4억 5천만부의 선거공보가 사용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 등을 위한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이를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다. 선거인이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전자 선거공보등을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 라. 세대원 모두가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발송하지 않도록 함(안 제65조의2제7항 신설).
- 마.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65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한 수에”를 “합한 수에서 제65조의2제7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수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등) ① 후보자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적 형태의 선거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적 형태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전자선거공보 및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선거공보등”이라 한다)의 제출, 발송 신청 및 발송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선

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선거공보등을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자선거공보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7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송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선거공보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⑦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모두 제5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가족(세대원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을 대리하여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 기한에 대해서는 제65조제6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⑨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자선거공보등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의2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비용

제255조제2항제1호의3 중 “제65조제1항·제2항”을 “제65조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으로, “선거공보”를 “선거공보·전자선거공보등”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선거공보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  
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  
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  
로 한다.

④ ~ ⑭ (생략)

<신설>

제65조의2제7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하는  
세대수를 제외한 수에-----  
-----  
-----

--.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전자선거공보등) ① 후  
보자가 제65조제1항에 따라 책  
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  
우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자적 형태의 선거  
공보(이하 “전자선거공보”라 한  
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제65조제9항에 따  
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후  
보자정보공개자료와 동일한 내  
용으로 전자적 형태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이하 “전자후보  
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전

자선거공보 및 전자후보자정보  
공개자료(이하 “전자선거공보  
등”이라 한다)의 제출, 발송 신  
청 및 발송 등을 위하여 정보  
시스템(이하 “전자선거공보통  
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전자선거공보  
등을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  
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⑤ 전자선거공보등을 받고자  
하는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선거공보의 발송  
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제7  
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후  
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송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속한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배부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전자선거공보등을 발송하여야 한다.

⑦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세대내의 선거권자인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모두 제5항에 따라 전자선거공보등의 발송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원은 가족(세대원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을 대리하여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전자선거공보등의 제출 및 발송 기한에 대해서는 제65조 제6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⑨ 전자선거공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자선거공보등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략)

<신설>

3. ~ 7. (생략)

④ (생략)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1의2. (생략)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選舉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65조의2에 따른 전자선거공보등의 작성비용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제65조제1항·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  
-----선거공보·전자선거공보등-----  
-----

<p>한 者</p> <p>2. ~ 8.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2. ~ 4. (생 략)</p> <p>③ ~ ⑫ (생 략)</p>	<p>-----</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제6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선거공보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 ⑫ (현행과 같음)</p>
--	---